임시조직운영지침

제정 2014.04.03 개정 2020.03.20 개정 2018.05.11 개정 2022.12.13 [전략기획처 혁신전략부 042-600-8148]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직제규정」제8조(임시조직) 및 「직제규정시행세칙」제4조(임시조직)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2.12.13>

- 1. "임시조직"이라 함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- 2. "직제담당부서"라 함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운영부서"라 함은 임시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본사의 부서(처,실) 및 지사를 말한다.
- 4. "인수부서"라 함은 임시조직의 업무종료 후 운영 중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관련 사항을 인수 받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2조의2(적용대상) 이 지침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인사명령을 받아 운영하는 임시조직에 대하여 적용하고, 인사명령 없이 여러 부서 소속 직원들의 참여 형태로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8.05.11>
- 제2조의3(구성사유) 임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20>
 - 1. 특정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
 - 2.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일정 기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 - 3. 경영 현안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직구성 및 인력조치가 필요한 경우
 - 4. 기타 사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3조(절차) ①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'임시조직 운영 계획(별지 제1호 서식)'을 작성하여 직제담당부서장에게 임시조직 신설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13>
 - 1. 설치목적 및 필요성
 - 2. 임시조직 명칭 및 소속
 - 3. 조직구성 및 세부 수행업무
 - 4. 직급별 소요인력 및 산출내역
 - 5. 정원조치 계획
 - 6. 운영기간 및 소요예산
 - 7. 사업(역무수행) 계획
 - 8. 기대효과
 - 9. 기타 직제담당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

- ② 직제담당부서장은 임시조직 설치목적의 타당성,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임시조직 운영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13>
- ③ 운영부서장은 임시조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직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부장 이상의 직위를 정원 조치 없이 겸직으로 운영하거나 팀·파트 단위 이하의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소속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직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13>
- ④ 운영부서장이 임시조직을 신설한 경우 결재를 득한 임시조직 운영계획을 직제담당부서장과 인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3.20>
- 제4조(소속) 임시조직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본부, 처(실), 지사의 소속을 정한다. 단,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장 직속으로 둘 수 있다.<개정2022.12.13.>
- **제5조(운영기간)** ① 임시조직 운영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제3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20>
 -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직제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20>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 또는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일정기간(1년 초과) 동안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20>
- **제6조(조직관리)** ① 임시조직의 정원은 소속 본부 및 부서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2.12.13>
 - ② 임시조직의 운영을 위해 본부 및 부서 간 정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직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2.13>
 - ③ 운영부서장은 수행업무, 기능, 소요인력, 정원조치 계획 변경, 운영기간 변경 등 조직에 대한 주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, 지체 없이 변경계획(별지 제2호 서식)을 작성하여 직제담당부서장에게 임시조직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, 그 절차는 제3조와 같다. <개정 2022.12.13>
 - ④ 직제담당부서장은 임시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시조직에 대한 실태 분석 등 조직 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.
 - ⑤ 운영부서장은 매년 연도 말 10일 전까지 '임시조직 운영성과 보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직제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연도 말 이전에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조직은 운영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13>
 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 운영된 조직으로서 정규조직 구성이 예정된 경우 '임시조직 운영성과 보고서'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3.20>
- 제7조(정규조직 전환) 직제담당부서장은 임시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 조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2.13>
 - 1. 경영 관련 중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년간 존치가 필요한 경우
 - 2. 프로젝트 추진기간이 다년간 소요되는 경우

- 3.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목적이 기관의 전략목표로 확대되거나, 향후 지속적 으로 추구해야 할 주요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
- 4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**제8조(업무종료)** ① 운영부서장은 수행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직제담당부서장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운영부서장은 임시조직 업무종료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,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수부서를 지정하고 직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2.13>
 - ③ 제2항에 따른 인수부서는 운영부서장과 인수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. <신설 2022.12.13>
 - ④ 운영부서장은 효율적인 후속업무 진행과 연속성을 위하여 인수부서에 업무 인수인계서와 '임시조직 운영성과 보고서(별지 제3호 서식)'를 작성·제출하고 직제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5.11, 2020.03.20, 2022.12.13>
- 제9조(임시조직의 폐지) ① 임시조직은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된다. 단, 존속기간 중에 전 부서원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폐지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임시조직의 운영부서장은 운영 기간 중,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타 폐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제담당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5.11>
 - ③ 직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직을 폐지할 수 있다.<개정2022.12.13.>
 - 1. 설치목적의 달성
 - 2. 법령개정 또는 정책결정에 따른 설치목적 상실
 - 3. 사업추진 실적이 없거나 추진근거 미비 등으로 설치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4.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**제10조(평가)** 임시조직 성과평가는 내부성과평가편람 및 인사평정지침에 의한다. <개정 2018.05.11, 2020.03.20>

부 칙

이 지침은 2014년 4월 3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임시조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	제1호	서식】	<개정2022.12.13.2
	게보포	\sim	

임시조직 운영계획서

1.	관련	.근거
----	----	-----

2. 설치목적 및 필요성

3. 운영계획

□ 명 칭:

□ 운영기간: . . ~ . . .

□ 수행업무 :

□ 조직구성

하부 조직 책임직위명 또는 담당업무(직급) 하부 조직 책임직위명 또는 담당업무(직급) 하부 조직 책임직위명 또는 담당업무(직급) 하부 조직 책임직위명 또는 담당업무(직급)

□ 소요인원 및 정원조치 계획

구분	소요인원					
丁正	직급	겸직	전담			
팀장	먑	명	명	\Rightarrow		
○○담당	급	명	명	_ ,		
계		명	명	-		

		정원조치(전담인원)	
	자체정원	정원 협	조
>	명	ㅇㅇ처	명
	명	ㅇㅇ처	명
	명		명

	사업수행	게히	(여므스채	게히
1 1	가입구♡	A1 22 1	ロコーナの	계월

Ò

□ 기대효과

Ò

□ 소요예산 및 내역

Ó

□ 기타사항

Ò

첨부 : 필요인원 산출내역

임시조직 운영 변경계획서

1. 관련근거

2. 조직현황

□ 명 칭:

□ 운영기간 :

□ 인력현황

그ㅂ	소요인원					
구분	직급	겸직	전담			
팀장	급	명	명	\Rightarrow		
○○담당	巾	명	명			
계		명	명			

	정원조치(전담인원)								
	자체정원	조							
>	명	ㅇㅇ처	명						
	명	ㅇㅇ처	명						
	명		명						

3. 업무수행 실적

□ 업무수행 계획

Ò

□ (현재까지의) 업무수행 실적

Ò

4. 임시조직 운영 변경계획(안)

□ 변경사유 :

□ 변경운영계획 ※ 변경되는 내용만 제출

○ 명 칭 : (기존)

→ 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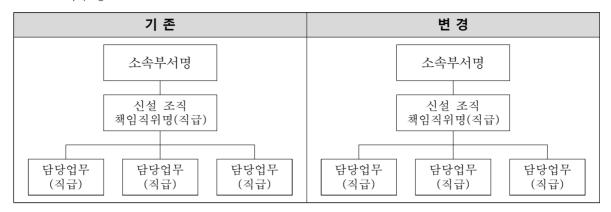
ㅇ 운영기간

기 존			변 경		
20xx.xx.xx	~	20xx.xx.xx	20xx.xx.xx	~	20xx.xx.xx

ㅇ 수행업무 : (기존)

→ (변경)

○ 조직구성



□ 소요인원 및 정원조치

구 분	기 존			변 경			
丁 正	직 급	겸 직	전 담	직 급	겸 직	전 담	정원조치 내역
 팀 장	급	명	명	급	명	명	• (반납) ㅇㅇ처 • (활용) 자체정원
o o 담 당	Пп	평	명	급	평	명	•(반납) ㅇㅇ처 •(활용) ㅇㅇ처
	계	西	명		西	명	

□ 기타사항

Ò

첨부 : 참고자료 1부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임시조직 운영성과 보고서

1. 조직현황						
□ 명 칭	:					
□ 운영기간	:					
□ 인력현황						
직급	전담 여부	정원	현원	성명	근무기간	비고
7 🗷	전담 / 겸직	0.6		0.0	L 1712	-1-
7=	11					
2. 예산 집행실 □ 3. 업무수행 성	j과					
4. 미진사항 및 □ □	Ų 향후 계획					
5. 기타사항 □ □						